

October 15, 2026

OECD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도입

I. 머리말

글로벌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조세투명성(Tax Transparency) 강화

OECD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암호자산 거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암호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를 마련하였다. CARF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 및 거래정보를 관할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각국 과세당국이 해당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이다.

기존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은 전통적인 금융계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보유·이전되는 암호자산 거래나 일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거래정보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CARF는 이러한 정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암호자산 거래를 별도의 보고 및 자동정보교환 대상으로 규율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CARF 이행을 약속하고 2024년 11월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CARF 다자간 권한당국 간 협정(CARF MCAA)에 서명하였으며, 2027년 최초 자동정보교환을 실시할 예정인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를 근거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자산 관련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국내 거주자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II. CARF 도입 배경: CRS의 정보 공백 보완

CRS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관할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과세당국은 이를 해당 계좌보유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과 자동으로 교환한다. 그러나 암호자산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보유·이전될 수 있어, 기존 CRS 만으로는 관련 거래정보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CARF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암호자산 거래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자동정보교환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III. CARF의 주요 내용

① 암호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교환

CARF 가 시행되면, 보고대상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보고한 비거주 이용자의 암호자산 거래정보는 그 이용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매년 자동으로 제공된다.

② 보고대상 범위가 광범위

암호자산의 법적 명칭이 아니라 기능과 실제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일정한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등도 보고대상 암호자산(Relevant Crypto-Assets)에 포함될 수 있다.

③ 거래소뿐 아니라 일정한 중개사업자도 적용 가능

CARF 상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중앙화된 암호자산 거래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자산 교환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고대상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이하 "보고의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④ 고객의 세법상 거주지 확인이 핵심

보고의무 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여 세법상 거주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납세자식별번호(TIN)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⑤ 해외 암호자산 거래의 조세투명성이 크게 확대

CARF 참여국 간 정보교환이 본격화되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수행한 암호자산 거래 역시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1. 어떠한 암호자산이 보고대상이 되는가?

CARF에서 "암호자산(Crypto-Asset)"이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의 검증과 보안을 수행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을 의미한다. 이처럼 CARF 는 명칭이나 법적 형식보다 자산의 기능과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암호자산을 정의하므로, 일반적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증권형 토큰 및 NFT 등도 그 요건에 따라 보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보고대상 암호자산(Relevant Crypto-Assets)은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2) 일정한 전자화폐상품, (3)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고의무 사업자가 적절하게 판단한 암호자산은 제외된다. 그 밖의 암호자산은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FATF 상 가상자산 및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NFT 도 원칙적으로 보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2. 누가 보고의무를 부담하는가?

CARF 의 핵심적인 보고주체는 보고대상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이하 “보고의무 사업자”)이다. 보고의무 사업자는 사업으로서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고대상 암호자산의 교환거래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의 상업성·정기성 및 실제 수행 기능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기술이나 플랫폼이 중앙화되어 있는지 또는 분산화되어 있는지는 그 자체로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특히 고객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고객실사 및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통제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

암호자산 거래소, 플랫폼 운영자, ATM 운영자, 딜러, 중개업자 및 시장조성자 등이 보고의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수동적으로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거래 검증 기능만을 수행하는 채굴·검증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국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 사업모델과 수행 기능을 기준으로 CARF 상 보고의무 사업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CARF 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VASP 기준과 비교하여 대상 자산 및 관할권과의 연결 기준이 보다 광범위할 수 있으므로, NFT 플랫폼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 관할권에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는 세법상 거주지, 설립·조직 또는 세무신고 관할,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관할 및 정기적 사업장 등의 연결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수의 관할권에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하나의 관할권에서 보고하고 다른 관할권에 이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복 보고를 조정할 수 있다. 지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중복조정 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핵심 인력이나 고객지원 기능 등 해당 관할권과의 연결요건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어떠한 거래정보가 보고되는가?

CARF 는 연말 보유잔액이 아니라 일정한 거래 자체를 보고대상으로 한다. 주요 보고대상 거래에는 법정화폐와 암호자산 간 취득·처분, 암호자산 간 교환, 미화 5 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매결제 및 기타 이전이 포함된다. 보고대상 이용자 및 필요한 경우 그 실질적 지배자에 대해서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세법상 거주지 및 납세자식별번호(TIN)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등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단체 이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실질적 지배자까지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정보는 암호자산의 종류별로 집계하여 보고한다. 취득·처분 및 교환거래의 경우 수수료를 반영한 거래금액 또는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고하며, 미화 5 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매결제와 기타 이전도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기타 이전은 가능한 경우 에어드롭, 스테이킹, 대출 관련 이전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외부 지갑으로 암호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산별 수량과 공정시장가치를 보고하고, 관련 지갑 식별자를 5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보고금액은 하나의 법정화폐로 환산하여야 하며, 거래시점의 평가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장부가액, 제 3 자 가격, 최근 평가액 또는 합리적인 추정액 등 적용 가능한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4.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의무 사업자는 매년 관할 과세당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과세당국은 국제협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거주지국 등 상대방 관할권의 과세당국과 이를 자동으로 교환한다.

2027 년 최초 정보교환을 개시하는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2026 년부터 국내 이행법령을 적용하여 2026 년 거래정보를 수집·보고하고, 이를 2027 년에 상대국과 교환하게 된다. 국제적인 정보교환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AAC)과 CARF MCAA 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각 국가 간 협정의 발효 여부, 필요한 통지 및 활성화된 교환 상대국 관계 등에 따라 실제 정보교환 범위가 정해진다. 2025 년 11 월 28 일 기준 53 개 관할권이 CARF MCAA 에 서명하였고 75 개 관할권이 CARF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최초 정보교환은 2027 년 또는 2028 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7 년 최초 정보교환 예정국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 및 2026 년 1 월 2 일부터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통하여 CARF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해당 이행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5. 실사 절차

보고의무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사 업무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CARF 상 의무 이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보고의무 사업자에게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단체 이용자로부터 유효한 본인확인서를 수취하고 세법상 거주지와 TIN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확인서의 수취부터 정보의 검증·갱신, 거래정보의 집계 및 최종 보고에 이르는 전반적인 실사·보고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CRS와의 비교

CARF와 CRS는 연례 보고 및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고객실사, 정보기술 시스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미 CRS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관할권이나 금융기관은 기존 시스템과 절차를 일정 부분 활용하여 CARF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CARF는 금융계좌의 잔액 및 수익정보가 아니라 암호자산의 교환·이전 등 거래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보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CRS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III.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암호자산 관련 사업자는 CARF 상 보고의무 사업자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암호자산의 매매·교환·중개 또는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국내법상 VASP 해당 여부와 별개로 CARF 상 보고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모델과 각 법인의 실제 수행 기능, 고객과의 거래관계 및 각 관할권과의 연결요건을 법인별·관할권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고객확인 체계가 CARF에서 요구하는 “세법상 거주지” 확인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고의무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세법상 거주지와 TIN 등이 포함된 본인확인서를 수취하고, 기존 고객정보나 다른 규제상

보고정보와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미 CRS 에 따른 실사를 완료한 고객에 대해서는 해당 실사 결과를 국내 이행규정상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거래 데이터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추적가능성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CARF 보고를 위해서는 법정화폐와 암호자산 간 거래, 암호자산 간 교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매결제 및 기타 이전을 자산별로 식별·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외부 지갑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도 자산의 수량과 가치 등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는 거래시스템, 고객정보시스템 및 세무보고 시스템 간 연계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 지갑 식별자와 본인확인서의 보관, 암호자산 평가방법의 일관성 및 최종 보고파일과 원천 데이터 간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암호자산 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도 해외 암호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여 암호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관련 거래정보가 CARF 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에 자동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부상 암호자산 관련 거래,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기타 국내 세무신고 내용이 실제 해외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임직원의 해외 암호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개인 및 회사 임직원이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한 암호자산 거래 역시 CARF 에 따른 연례 자동정보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개인의 세법상 거주지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 및 이전 내역을 적절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도 임직원 보상이나 비용정산 등 업무상 암호자산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세무처리 및 증빙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보고의무 사업자는 시행 초기부터 실사·보고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CARF 는 고객의 세법상 거주지 확인에서부터 거래정보의 수집·집계, 외부 지갑 관련 기록의 보관 및 연례 보고까지 일련의 운영체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보고의무 사업자는 각 관할권의 시행시기와 연결요건을 확인하는 한편, 본인확인서 수집 절차, 데이터 항목과 보관정책, 거래 집계 로직 및 보고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별 이행규정의 차이와 중복보고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6. CARF 대응은 국내의 기존 세무신고 의무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CARF 에 따른 정보교환은 그 자체로 과세를 발생시키는 제도라기보다 과세당국 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과 개인은 CARF 대응만을 별도로 검토하기보다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국내 가상자산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시기 및 범위, 기타 소득·법인세 신고 내용과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고의무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 본인확인, 거래집계 및 기록보관 등 국내 이행규정상 의무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IV. 맺음말

CARF 는 기존 금융계좌 중심의 자동정보교환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웠던 암호자산 거래정보를 국가 간 정기적으로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암호자산 분야의 조세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27 년 최초 정보교환 예정국에 포함되어 있고 국내 이행규정도 2026 년 1 월 2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자산 관련 사업자는 자신이 CARF 상 보고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고객실사, 거래정보 수집·집계, 기록보관 및 보고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외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 암호자산 거래정보가 국내 과세당국에 자동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암호자산의 보유·거래 내역을 재점검하고 국내 세무신고 내용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CARF 의 국가별 시행 및 정보교환 범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 구성원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T 02.3404.0364

E minkyong.cho@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